

『社會科學研究』 투고규정 · 편집규정 · 심사규정

2002. 10. 1 제정
2006. 8. 1 개정
2007. 7. 1 개정
2010. 3. 1 개정
2012. 12. 1 개정
2015. 3. 1 개정
2017. 6. 1 개정
2018. 8. 1 개정

社會科學研究 투고규정

원고제출

1. 매년 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당해 연도 권(卷) 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가 발행되는 『사회과학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학술논문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제출자격 : 원고 제출자격은 사회과학분야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내용에 따라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의 요건에 준하는 자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3. 원고제출방법 : 원고는 제출 마감일까지 사회과학연구원 전자메일(ris@dongguk.edu)로 송부하거나 원본 1부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원고 파일을 저장한 이동식 저장장치 1개를 동봉하여 사회과학연구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연도 권의 제1호를 위해서는 1월 20일, 제2호를 위해서는 4월 20일, 제3호를 위해서는 7월 20일, 제4호를 위해서는 10월 20일까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쓴 것이어야 하며, 『사회과학연구』의 원고작성지침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5. 사회과학연구원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채택되지 않은 원고의 원본

및 이동식 저장 장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원고작성지침

1. 원고분량 : ① 기획논문 : 200자 원고지로 140매 내외
② 일반논문 : 200자 원고지로 120매 내외
2. 원고는 제목, 제출자, 목차, 본문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하며, <표> 및 <그림> 등은 본문 내에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3. 본문의 장, 절, 항, 목은 로마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한다.
I. 1. 1) (1) ① 가)
단, 더 세부적인 항목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자가 일정한 규칙을 갖고서 임의로 선택한다.
4. 본문 작성이 완료된 위치에 본문과 구분하여 <참고문헌>을 기재하되 참고문헌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5. 국문요약은 본문의 시작 전에 편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하고, 영문 요약(Abstract)은 논문 말미에 첨부하되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6. 본문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만 漢字를 쓰도록 하며, 기타의 외국어 표기는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원문 옆에 괄호로 표기한다.
7. 본문의 내용과 관계되는 저술을 소개하거나 추가적인 설명 또는 관련된 논의를 소개하고자 할 때는 본문주를 사용한다. 본문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은 외국어의 경우 原語를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또는 국한문 혼용의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의 원고작성범례를 참조한다.
8. <표> 및 <그림>의 경우 그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본문주와 같다. 출처와 본문주가 중복될 경우에는 재인용의 예를 따른다.
9.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논문제목의 우측상단에 별표(*)를 하여 각주로 기재할 수 있다.

원고작성범례

I. 논문형식

1. 원고는 제목, 저자, 목차(장만 표기), 국문요약(주제어 포함), 본문, 참고문헌, 영문요약(키워드 포함)의 순으로 구성한다.
2. 논문요약(국문 및 영문)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한다.
3.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국, 영문), 저자이름(국, 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전화, 팩스번호, E-mail 주소 등을 명기하되 표지 이외에는 저자를 짐작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4.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 제일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로 본다.
5. 원고는 4부를 작성하여 이동식 저장장치 및 논문기고신청서(별지 서식)와 함께 『사회과학연구』 편집위원회로 우송한다.
6. 국·영문 주제어(Keywords)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7. 외래용어 및 외국어: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호 안에 외래용어를 부기한다. 외국 인명과 지명은 외래어 표기법 기준에 따라 현지의 발음대로 표기하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표기에 이어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외국 혹은 국제적인 기관, 단체, 정당 등의 이름에 통용되는 역어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사용한다(예: 국제연합). 그렇지 않은 경우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 번역 명과 괄호 속에 통용되는 원어 약어와 원어명을 병기한 다음 이후에 언급할 때는 원어 약어를 사용한다.
8. 원고의 본문주, 참고문헌 등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II. 원고작성시 집필요령

[본문주]

1. 인용,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하여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page 표기는 출판년도 다음에 곧바로 콜론을 하고 한 칸 띄우고 숫자를 표기한다. 또한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 1) 저자가 본문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저자, 연도, 페이지 순)
 - 이황우(1999: 30)에 의하면...
 - 김보환(1999: 31)과 정진환(1992: 32)의 연구에서도...
 - Stevens(1998: 217-220)의 주장을 수정하여...
 - 이상현(1991: 33)과 Berg(1992: 34)를 들 수 있다.
 - 2) 저자가 본문과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 ...입장을 취하고 있다(김충남, 1999; 이종범 등, 1990; Berg, 1992).
 -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으며(Green & Taylor, 1988: 205; Eisenberg, et. al., 1973)
 - ...라고 볼 수 있다(「경찰법」 § 11④; 김규식, 1999; 경찰청, 1994: 500).
 - 3) 법조문을 인용하는 경우
 - 「경찰법」 제11조 제4항에서는...
 - 4) 특별한 저자가 없는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 경찰청, 2007: 36.
 - 5)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일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et al.)”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 ...이다(이황우 · 조병인 · 최응렬, 2006: 57).
 - ...이다(이황우 외, 2006: 82)
 - 6) 연도가 같은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 인용될 경우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a: 50).
 - ...라고 볼 수 있다(김보환, 1998b: 50).
 - 7)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최응렬, 2005: 33
 - 8)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지명, 발행 ○○년 ○○월 ○○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 ...있기를 기대한다(「중앙일보」, 2005. 4. 26: 33).
 - 9)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한다.

 - ...이다(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2007.10.20>).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여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붙이고(예) ...하였다.¹⁾, 그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의 나열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만으로 제한한다.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 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의 순으로 제시하고, 후자는 알파벳의 순으로 제시한다.
2. 동일 저자의 저술을 두 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 순으로 나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간된 것이 두 편 이상일 때는 저술제목의 가나다 또는 알파벳순으로 나열하되, 연도표기 뒤에 a, b, c...를 부기하여 구별하도록 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5.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발표장소와 날짜를 명기한다.
6. 참고문헌은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으로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단행본인 경우[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항]
 - 이윤호. (2005a). 「범죄학개론」, 박영사
 - 이윤호. (2005b). 「교정학개론」, 박영사
 - 이황우·조병인·최응렬. (2005a).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일반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수록서명」 및 발행제호, 페이지]
 - 주희종. (1999). “범죄에 대한 공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87-121.
 -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4(1): 367-426.
 - 3) 학위논문인 경우[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학위성격」, 수여기관명]
 - 정진환. (1979). “한국경찰교육제도의 발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4) 단행본의 저자와 기고논문의 저자가 다른 경우[논문저자. (출판연도). “논문제목”, 수록서의 저자명, 「수록서명」, 수록페이지, 출판사항]
 - 김창·안영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형태 비교”, 박동·김광웅 (공편), 「의회와 행정부」, 77-115, 법문사.
 - 5) 기타 저자가 없는 경우
 - 경찰청. (1993). 「1992 경찰사료연감」.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 6) 일간지, 주간지 등의 기명기사와 칼럼일 경우
 - 최응렬. (2005).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논의 ‘수사의 질’ 향상에 초점 맞춰야”, 「중앙일보」, 4. 26: 33.
 - 7)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
 - 지명. 발행 ○○년 ○○월 ○○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년 ○○월), page를 기재한다.
 - 「중앙일보」. (2005). 4. 26: 33.
 - 8) 외국문헌이 단행본인 경우(저서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Weisburd, David and Braga, Anthony A. (eds.). (2006). *Police Innovation: Contrasting Perspective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9) 외국문헌이 논문인 경우(Journal명은 이탤릭체로 변환)

- Powell, Dennis D. (1990). "A Study of Police Discretion in Six Southern Citi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7(1): 1-7.

10) 번역서의 경우

- Hirschi, Travis.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New York, New York: Free Press, 김인필 (역). (1995). 「범죄에 관한 일반이론」, 박영사.
- 베버(M. Weber). (1990). 「유교와 도교」, 이상윤 (역), 문예출판사.
- 클레그 · 히긴스 · 스파이비(S. R. Clegg, W. Higgins and T. Spybey). (1994). "경제문화: 포스트 유교주의와 사회민주주의", 공유식 · 김혁래 · 박길성 · 유홍준 (편). 「신경제사회학의 이해」, 195-210, 역사비평사.
- Weber, Max. (1951). *The Religion of China*, translated by Hans H. Gerth, New York, New York: Free Press.

11) 인터넷 자료를 인용할 경우

제작자, 제작년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자 순으로 한다.

- ...이다(홍길동.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 <http://ks.ac.kr> /2007. 10. 20).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I, 1, 1), (1), ①, 가)의 순서를 따른다.

I. 로마숫자(글자크기: 12 진하게, 중앙으로)

1. 아라비아 숫자(글자크기: 10 진하게(이하 같음), 2칸 들여쓰기)

1) 한글(4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6칸 들여쓰기)

① 동그라미 숫자(8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9칸 들여쓰기)

2. 투고논문의 규격과 양식

용지: A4용지

머리말 10, 꼬리말 0, 위쪽 46, 아래쪽 46, 오른쪽 45, 왼쪽 45

줄 간격 180%

본문 글자크기 10point.

글씨체: 바탕체

3. 표와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표 1>, <그림 1>) 표와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설명주는 "주 : 1), 2), 3)"으로 시작하고(※주: ()은 점유율), 자료 출처는 아래 부분에 밝힌다(※ 자료: Duncan, 1981: 349의 재구성).

4. 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는 *p<.05, **p<.01, ***p<.001과 같이 표기한다.

5. 그림에서는 x축과 y축과 곡선·면적 등으로 표현된 각 부분의 명칭을 반드시 붙여 주어야 한다.

6. 원고 작성의 편의상 내용주,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만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7.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社會科學研究 편집규정

논문집 발행

1. (발행회수) 「사회과학연구」의 발행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발행일시) 「사회과학연구」는 매년 당해 연도 권 제1호는 3월 20일, 제2호는 6월 20일, 제3호는 9월 20일, 제4호는 12월 20일에 발행한다.
3. (원고마감)
 - 1) 각 년도의 제1호에 논문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사회과학연구원에 제출하며, 제2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4월 20일까지, 제3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7월 20일까지, 제4호에 게재를 원할 경우 논문을 당해 연도 10월 20일까지 사회과학연구원에 제출한다(제출방식은 「사회과학연구」 투고규정 참조).
 - 2)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논문은 다음 호 게재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원고분량) 「사회과학연구」에 게재할 원고는 기획논문은 200字 원고지로 140매 내외, 일반논문은 200字 원고지로 120매 내외여야 한다. 제출원고가 현저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필자에게 첨삭을 요청할 수 있다. 필자가 첨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논문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5. (언어) 제출원고는 원칙적으로 우리말(한글)로 쓰여진 것이어야 한다.
6. (심사) 제출원고는 반드시 「사회과학연구」의 심사규정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판정받는다(자세한 사항은 「사회과학연구」 심사규정 참조).
7. (편집) 게재가 결정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책임 하에 「사회과학연구」의 편집형태에 맞춰 일괄 편집한다.
8. (교정) 게재 원고의 교정은 사회과학연구원이 담당한다. 단, 필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의 교정을 허용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1. (구성) 편집위원회는 산하 연구부장과 연구위원의 추천을 받아 연구원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특히, 정치외교학, 북한학, 행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경제학, 국제통상학, 경찰행정학, 식품산업관리학 등 사회과학 각 분야에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교내외 교수들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2. (목적)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를 내실 있게 발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임무) 편집위원회는 「사회과학연구」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특집 및 기획의 계획과 심사, 투고논문의 심사위원 선임,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와 관련된 여타의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4. (회의 개최 및 의사결정)
 - 1) 편집위원회 회의는 매년 원고제출마감 및 심사완료에 맞춰 각 4회씩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2) 편집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히 결정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들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
 - 1) 편집위원장은 전체 편집위원 중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차 연임할 수 있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기획과 편집 그리고 학술지 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社會科學研究 심사규정

심사위원 선정

1. 「사회과학연구」(이하 본 학술지라 칭함)에 게재를 희망하는 논문의 원고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출원고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모든 제출원고에 대하여 한 편당 2인으로 하되 제3심사위원이 위촉될 수 있고, 이 경우를 포함하여 논문 1편당 최대 3인으로 한다. 이 때 원고제출자와 명백히 특별한 관계에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공분야의 편집위원이 논문의 주제와 내용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추천하여 편집위원 전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할 때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3편 이상의 논문심사를 하지 않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심사절차

1.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심사하고 종합적인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논문 심사결과 통보서' 양식을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논문 심사 의견서 양식

논문심사의견서

※ 아래 인적사항은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심사위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e-mail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논문제목	
------	--

〈심사평가〉

항 목	점 수										
	10	9	8	7	6	5	4	3	2	1	
주저의 적절성											
연구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구성·집필의 적절성											
논문 전개의 명료성											
활용자료의 충실도											
학술적 가치											

〈판 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70이상	62-66	55-61	42이하

- 1) 게재 가: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2) 수정 후 게재: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수정 후 재심: 내용의 전반적인 보완 및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보완 및 수정 후 별도의 심사를 진행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 게재 불가: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거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심사위원은 “심사평”을 첨부하여 심사소견 및 판정내용과 ‘수정사항’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게재여부는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를 검토하여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6. 편집위원회의 의결 후 게재 불가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출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한편 재심사로 판정된 경우에는 초심에서 ‘게재 가’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7.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 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8.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거쳐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이 이루어져야 게재할 수 있다.
 9.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는 심사위원이 특별히 거부하지 않는 한 사유가 명시된 심사의견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재투고된 논문은 신규논문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수정지시

1. 논문의 원고작성 형식이 본 학술지에 맞지 않거나 심사 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을 지시한다.
2. 수정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본 학술지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2. 10. 1)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6. 8. 1)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2007. 7. 1)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0. 3. 1)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5. 3. 1)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7. 6. 1)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2018. 8. 1)

「社會科學研究」 윤리규정

2007. 9. 1 제정

제1장 시행지침

- 제1조 **【윤리규정서약】** 사회과학연구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에서 학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연구원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에 서약해야 하며 이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제2조 **【윤리규정과 현행법과의 갈등】** 현행법이 윤리규정을 제한할 경우 현행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윤리규정이 현행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본원의 윤리규정을 따라야 한다.
- 제3조 **【윤리규정 위반보고】** 본원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자는 다른 이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자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하며,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원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단,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보고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4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연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제6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 제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본원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원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자는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0조 **【표절】** 본원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타인의 연구 결과의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11조 **【출판업적】**

1. 본원에서 학술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을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3.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 결과가 본원의 학술지에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지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인용 및 참고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하여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제14조 【편집위원 윤리】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심사위원 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위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과학연구』 제00권 제0호 논문기고 신청서

성 명	0 0 0 (한자: 0 0 0) (영문:)		
소 속 (*영문)		직 위 (*영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휴 대 폰			
E-mail			
논문분야			
논문제목			
영문제목			
국문 주제어			
Key Words			
논문내용의 요약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고자 유의사항	<p>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게재가 거부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연구 편집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이 논문이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을 것. 3. 이 논문이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을 것. 		
논문 복사전송권의 본원 위임 여부	가() / 부() ※ 복사전송권이란 학술지의 인터넷 전송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말함.		

* 보내실 곳: 11010-71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집위원회

* 보내실 내용: ① 논문기고 신청서, ② 논문 사본 3부, ③ 논문디스크 1매

* 『사회과학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있음에 동의합니다.

「社會科學研究」 원고모집 안내

I. 발행예정 논문집

1.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4호

(1) 발행 예정일: 2018년 12월 20일

(2) 원고접수 마감일: 2018년 10월 20일

2. 『사회과학연구』 제26권 제1호

(1) 발행 예정일: 2019년 3월 20일

(2) 원고접수 마감일: 2019년 1월 20일

* 원고는 200자 원고지 140매(「한글」 프로그램 기준, A4용지 2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게재비: 20만원
30만원(연구비 지원받은 경우)

* A4용지 20페이지 기준, 1페이지 초과 시 페이지당 1만원 추가됩니다.

* 사회과학연구원은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도 훌륭한 글들을 많이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투고시 유의사항

1. 논문기고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십시오. 특히, 투고자의 주소, e-mail, 전화번호, 생년월일(게재확정 후 KCI 등재시 필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영문초록은 A4용지 1매 이상이어야 하며, 영문초록에는 영문이름과 Key Word를 주제어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주제어는 국문·영문 모두 5개 이상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초록이 지나치게 허술할 때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5. 인용문헌은 본문주로 처리됨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6. 본문의 인용문헌과 참고문헌의 서지정보가 일치되어야 하고 참고문헌을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문 의

투고와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소: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편집위원회
- * 전화번호: 02) 2260-3513
- * e-mail: ris@dongguk.edu
- * 홈페이지: riss.dongguk.edu

社會科學研究

第25卷 第3號, 2018年

- 발행인 : 이성량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 강재원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편집위원 :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무규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병선 (계명대학교 언론광고학부)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이재철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욱 (한국은행 국제국)
임상일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임석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전종규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김용환 (동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성택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하홍열 (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부)
황재현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발행처 :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원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TEL (02) 2260-3513, FAX (02) 2260-8772

E-mail : ris@dongguk.edu

인쇄처 : 우공출판사

서울시 중구 을지로 3가 302-1 ☎ (02)2266-3323

발행일 : 2018년 09월 20일
